

1. 개정이유

그간 관광산업(호텔업 및 유원시설업) 운영에 있어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광사업 통합폐업신고 규정 신설로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호텔 등급평가요원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구성을 다양화하고, 단일 지표로 평가하는 호텔에 대해서도 등급평가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유원시설업의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수질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산업 환경조성을 마련하는 한편,

‘20년부터 ’관광자원개발‘(균특 지역자율계정) 예산이 지방이양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광사업 폐업 신고 시 등록기관의 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폐업신고 하던 것을 어느 한 기관에 통합폐업 신고할 경우 다른 기관에 폐업서류를 송부하여 일괄 폐업 처리할 수 있는 제도 신설(안 제17조 제3·4항, 별지 제24호서식)
- 나. 단일 지표로 평가하는 호텔(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및 1·2성 관광호텔업)에 대하여 등급평가 재신청 기회 1회 부여(안 제25조의2 제1항)
- 다. 호텔경영사 시험을 격년제 시행으로 전환(안 제49조제1항)
- 라.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의 자격기준 확대(안 제72조)
- 마.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 추가(안 별표 15)

- 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대상 중 관람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탑승인원 기준(5인승이하→6인승이하) 완화 (안 제40조 제1항 별표11)
- 사. 안전관리자는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41조 제3항)
- 아.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결과 통지의무화 신설(안 제39조의2 별표10의2)
- 자.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2년마다 4시간 이수) 규정 신설(안 제42조 별표13)
- 차. 가상현실(VR) 체험 유기기구에 영화 허용 등 영상물 설치 규정 신설 (안 제42조 별표13)
- 카.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지자체의 보고 규정 신설(안 제67조 제1·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사업자 교육 예산 관련기관 협의 필요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등의 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1·2성급으로 한정한다), 한국전통

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한 자는 등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5항 후단에 따라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의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 본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호텔경영사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6호”로, “10일”을 “20일”로 한다.

6. 법 제49조제2항 및 제51조에 따라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의 추진현황

제7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호텔”을 “관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

여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원 1명 이상
별표 11 제2호나목1) 다)의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란 중 “5인승”을 “6인승”으로, 같은 란 중 “5인승”을 “6인승”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9) 중 “제40조제8항”을 “제4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11)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에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1호 및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경영사 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적용례) 별표 13의 제2호가목(6) 개정 규정은 2021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어시험 종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1년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합·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별 표 11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 치·운영하는 자는 별표 13 제2호(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제6조(관람형 유기기구 영상물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람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영상물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제50조에 의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정 이전에 설치한 영상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①·② (생략) <u><신 설></u>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등의 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u><신 설></u>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① 제25조제5항 후단에 따라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의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 기준 및 임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	<u>받아 이를 해당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1·2성급으로 한정한다),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한 자는 등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5항 후단에 따라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의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 기준 및 임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유원시설업 사업장에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생략)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67조(보고)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고는 매 연도 말 현재의 상황

-----3개월-----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
--. 다만, 호텔경영사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보고)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49조제2항 및 제51조에 따라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의 추진현황

② ----- 제2호 및 제6호-----

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고는
지정 또는 승인 즉시 하여야 한
다.

제72조(평가요원의 자격) 영 제66
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요원
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신설>

3. 호텔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1명 이상
가. 나. (생략)

----- 20일 -----

--.

제72조(평가요원의 자격) -----

-----.

1. 2. (현행과 같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
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
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
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연구
한 경력이 있는 연구원 1명 이
상

4. 관광 -----

가. 나. (현행과 같음)

<u>4.</u>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호부터 <u>제3호</u>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u>5.</u> ----- ----- <u>제4호</u> ----- ----- -----
---	--